

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황 규 복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이 제약됨에 따라 공연·전시 등의 제작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3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- 이에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제7조제6호에 “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”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의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칠 것입니다.

감사합니다.